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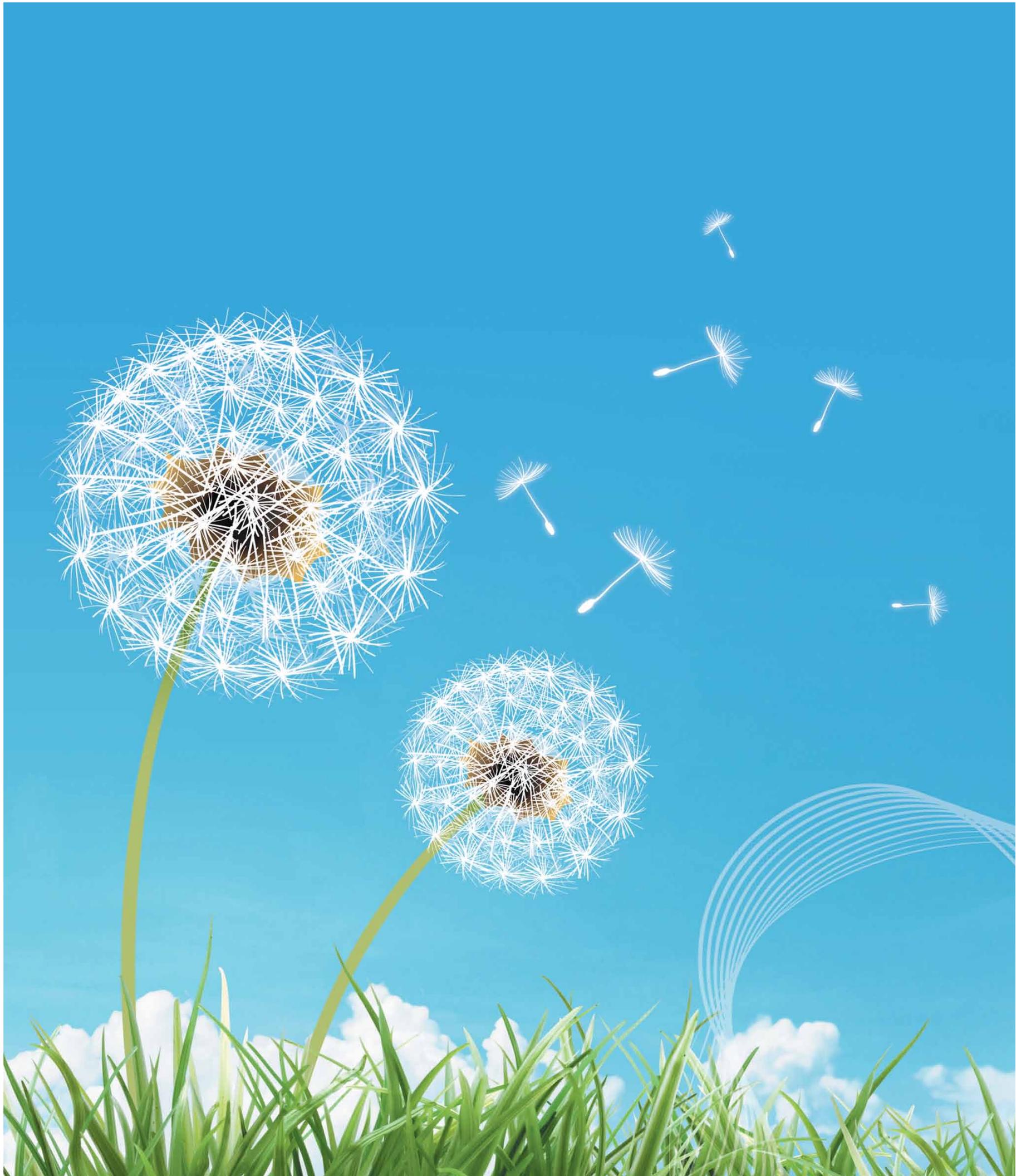
Humansia

휴먼시아 국민임대 A-5BL(880호)

향기를 품은 행복플러스 - 휴먼시아
자연을 담은 또 하나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원 로맨스

LH 경기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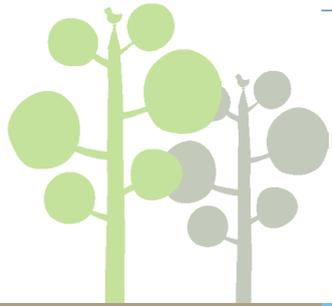


호매실에 행복의 향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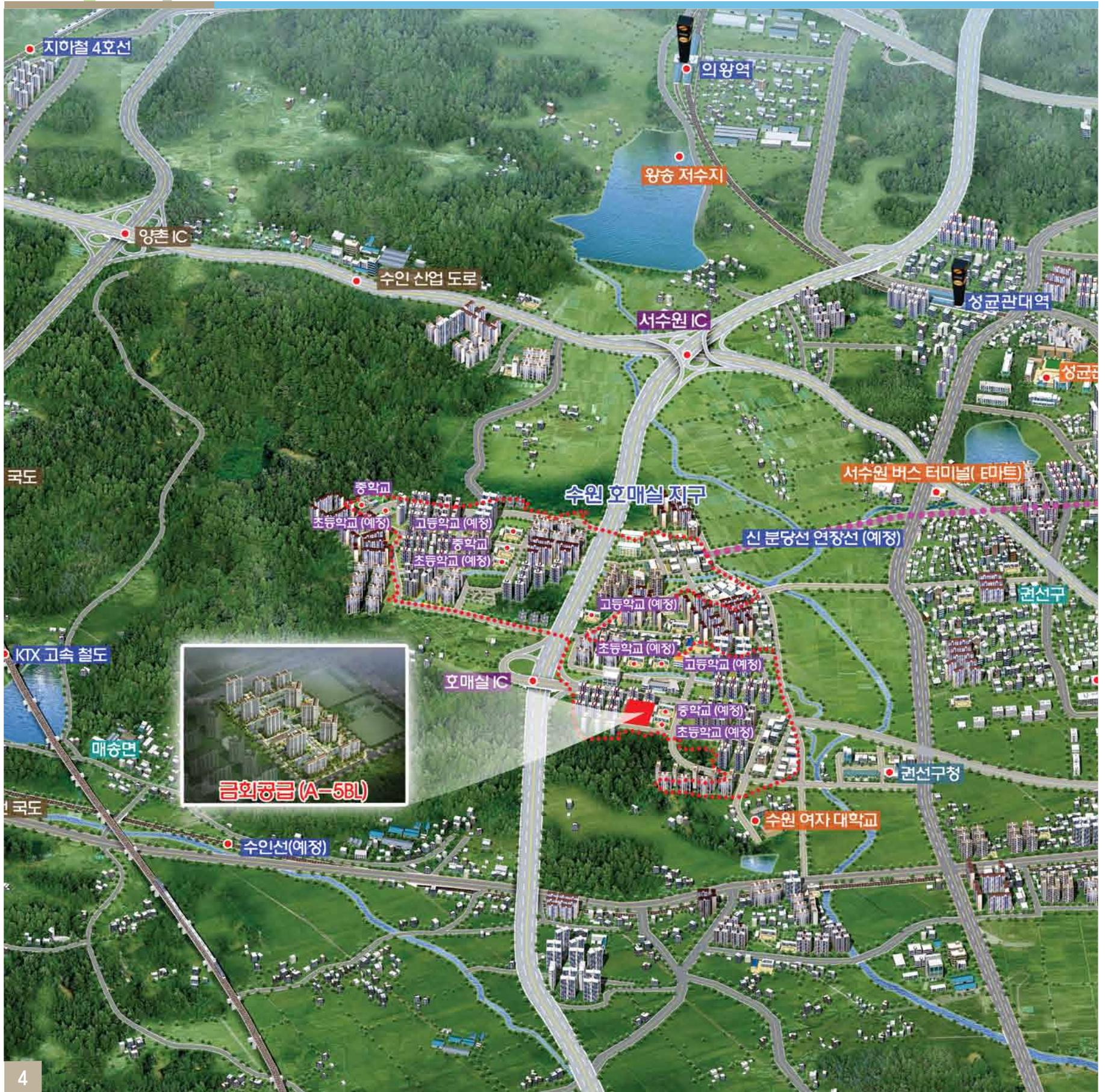
향기를 품은 행복 플러스 -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CONTENTS

- 04 위치 | Location
- 06 지역 | Region
- 08 단지설계 | Housing
- 10 형별평면 | Unit Plan
- 24 배치도 | Complex Map
- 26 마감재 내역 | Options Overview
- 27 공급안내 | Introduction



행복플러스 수원 호매실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소중한 삶이
더 • 행 • 복 • 하 • 게...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에
행복의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향기가 흐르는 곳...

누리고 싶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던 것들... 느끼고 싶었던 것들...
수원 호매실에 모두 담아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푸른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

● 더 가까운 교통

-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가 강남까지 20분대, 42번 국도와 서수원 IC가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와도 빠르게 연결합니다.
- 신분당선 연장선이 향후 개통되면 수도권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 더 풍부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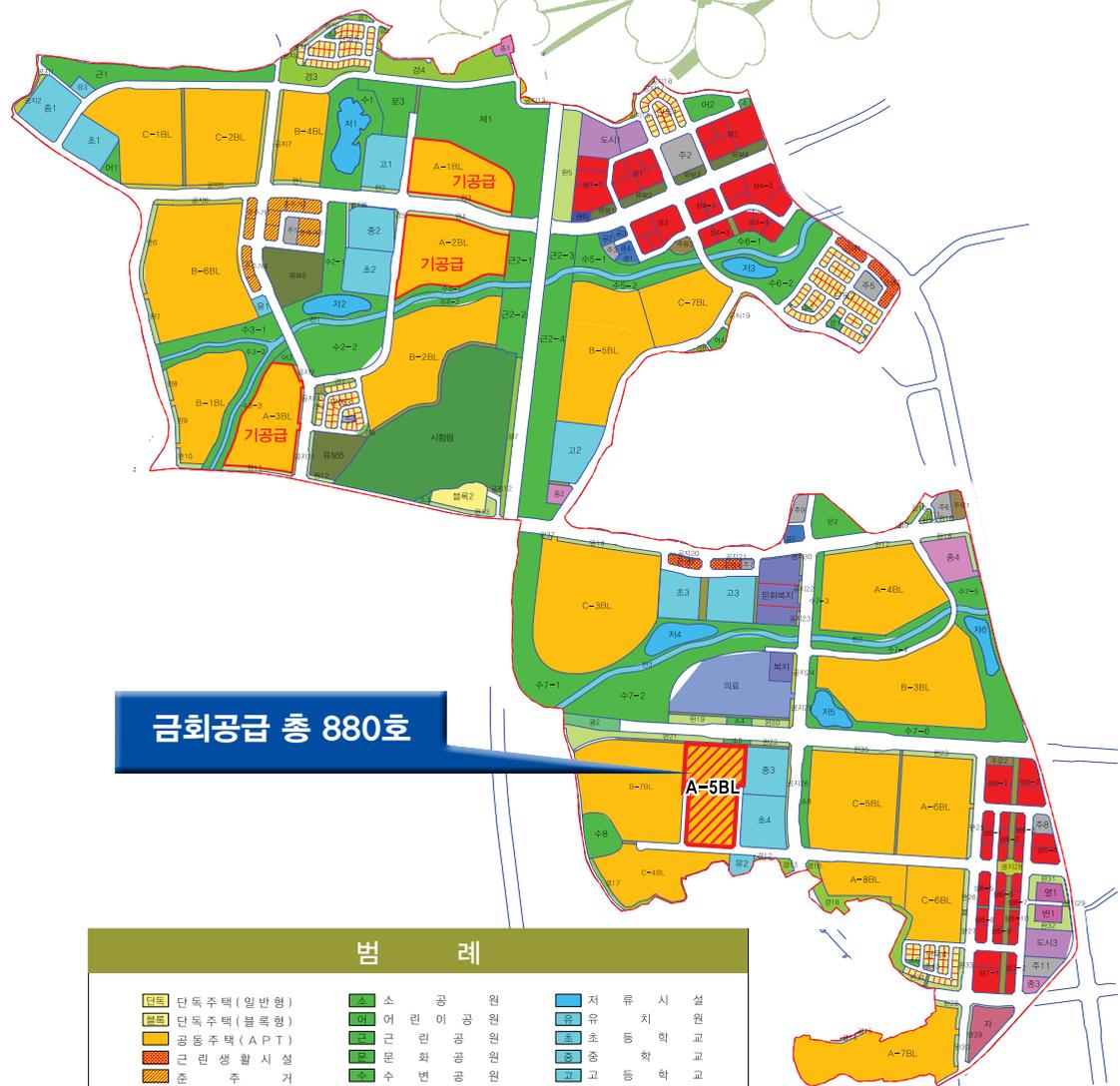
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인접지역에 수원여자대학교, 서울대 수원캠퍼스, 성균관대학교가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환경이 당신의 자녀까지 끌리게 합니다.

● 더 푸르른 자연

철보산과 황구지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 지구 내 대규모 녹지축이 삶에 지친 당신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 더 편리한 생활

권선구 행정타운과 다양한 쇼핑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여심을 반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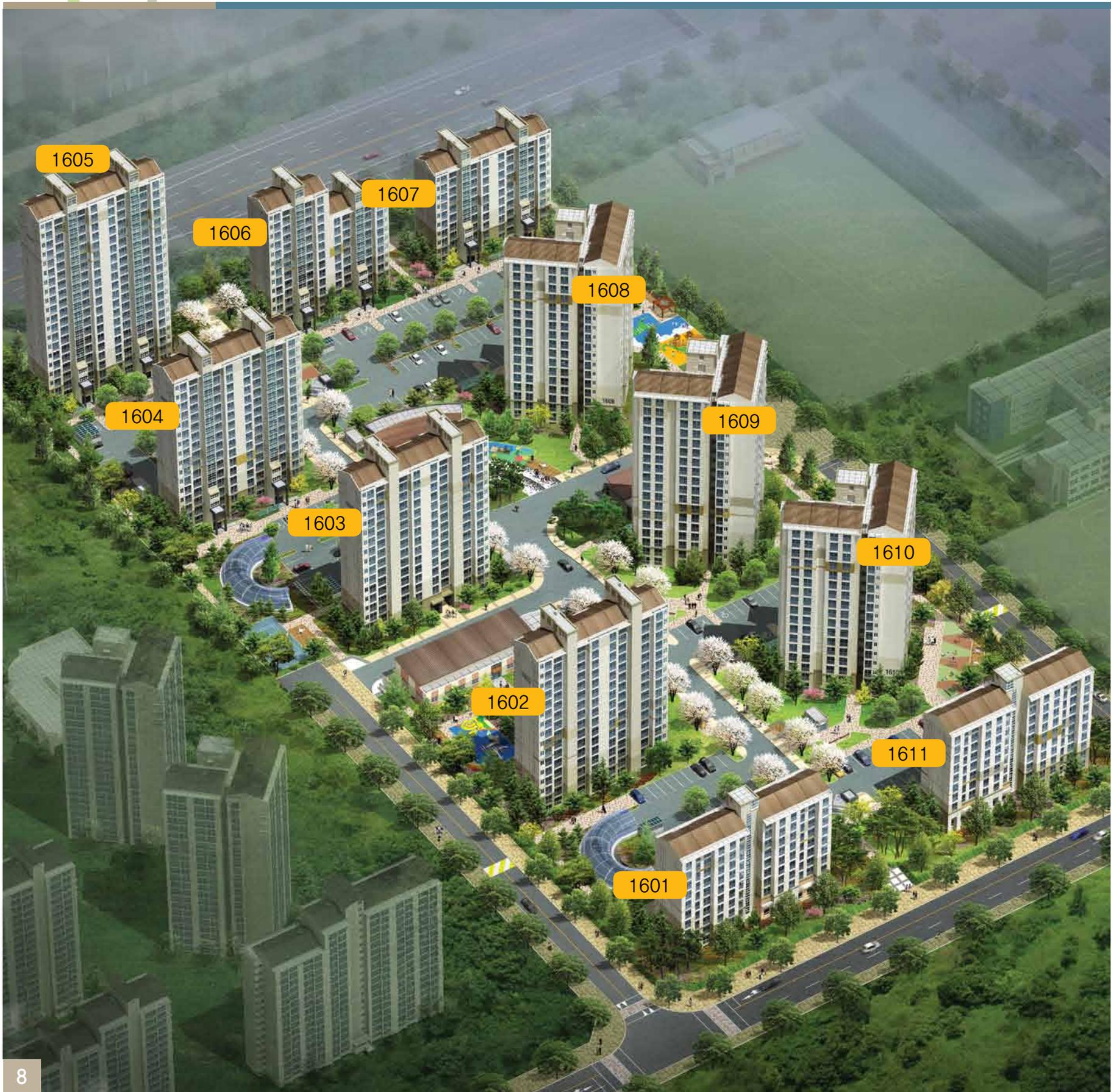
| 범례 | | | |
|------------|-------|--------|------------|
| 단독주택 (일반형) | 소공원 | 저류시설 | 유치원 |
| 단독주택 (블록형) | 어린이공원 | 유초등학교 | 중학교 |
| 공동주택 (APT) | 근린공원 | 고등학교 | 공공청사 |
| 근린생활시설 | 수계 | 문화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 준주거 | 체육공원 | 의료시설 | 종교시설 |
| 업무 및 상업시설 | 완충녹지 | 주유소 | 전기 및 열공급설비 |
| 도시지원시설 | 연결녹지 | 유보지 | |
| 도로 | 경관림 | | |
| 보행자 전용도로 | 공원 | | |
| 주차장 | 시림 | | |
| 자동차정류장 | 하천 | | |
| 교통광장 | | | |



Life = Happy 삶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공간!

수원 호매실의 하늘아래 내가 'C'를 담아 행복 공간을 창조합니다.

The 아·름·답·게... The 편·리·하·게... The 자·연·답·게...



행복을 꿈꾸는 공간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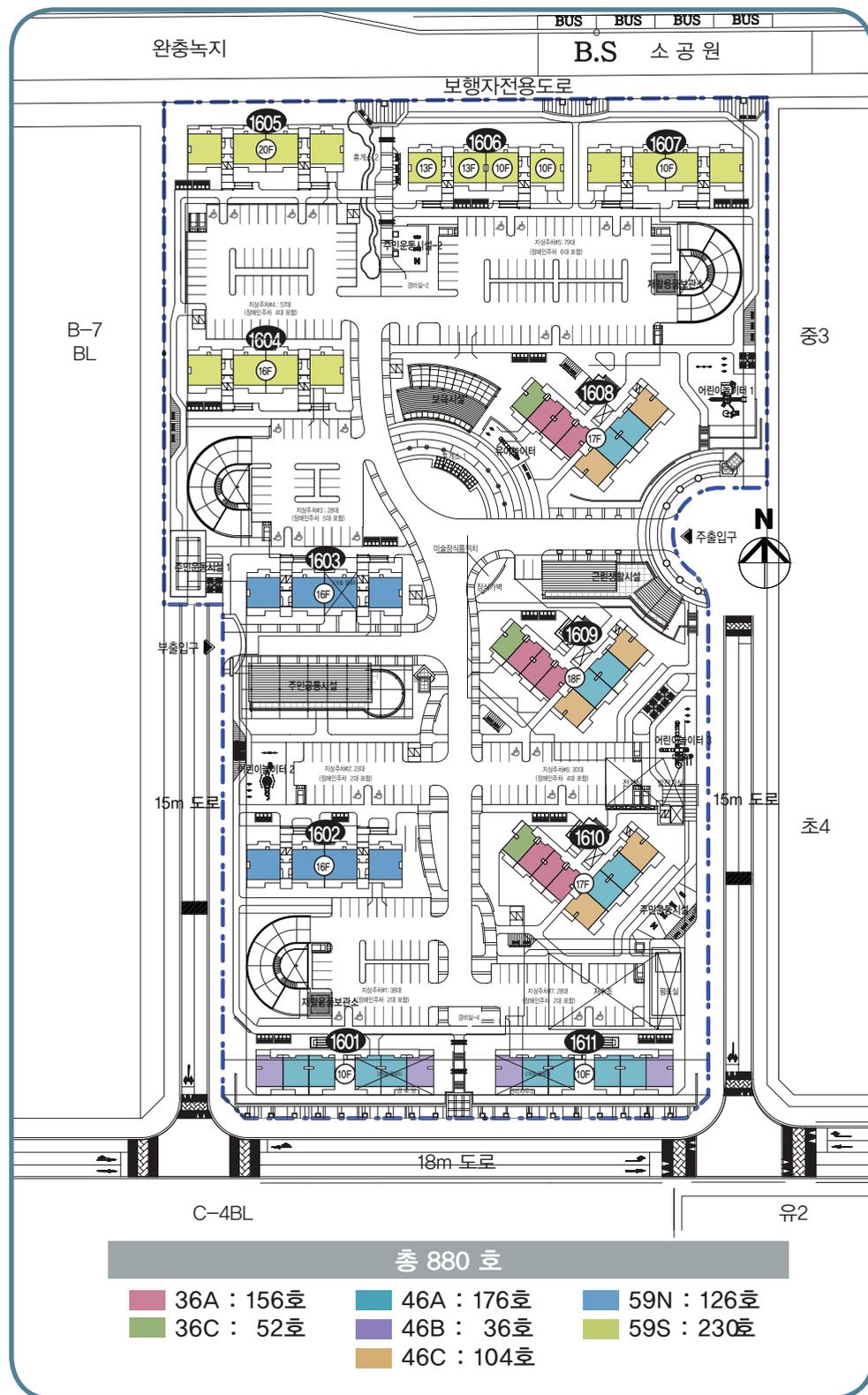
호매실의 'C'을 보면 망설임이 멈추어 집니다.

● 일자형 배치

동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원한 바람과 햇살이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일자형 배치를 하여 자연과 더 더 더 가깝게 숨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양한 편의시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바쁜 당신도 쉽게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추었습니다.



36A

전용 36.63㎡ 156 호

| | | |
|---------|---------|---|
| 전용면적 | 36.6300 | ㎡ |
| 주거공용면적 | 14.4627 | ㎡ |
| 기타공용면적 | 1.5103 | ㎡ |
| 지하주차장면적 | 10.6930 | ㎡ |
| 계약면적 | 63.296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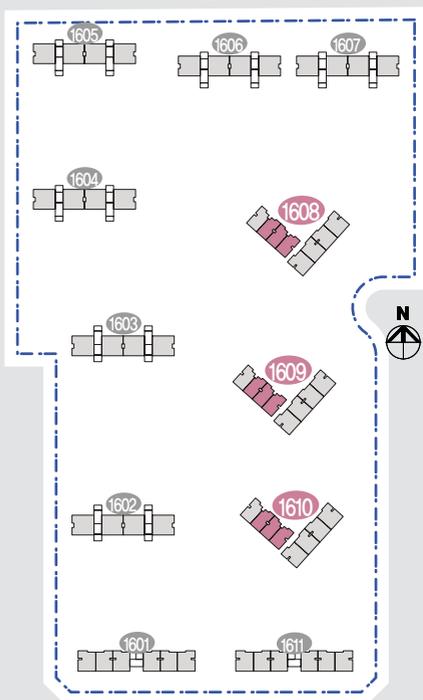
실별면적

| | | |
|---|-------|-------|
| 거실 / 침실 | 13.16 | ㎡ |
| 반침 | 0.96 | ㎡ |
| 주방 / 식당 | 10.94 | ㎡ |
| 욕실 | 3.20 | ㎡ |
| 침실 1 | 6.52 | ㎡ |
| 현관 | 1.85 | ㎡ |
| <hr/> | | 36.63 |
|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red;"/> | | |
| 발코니 1 | 7.33 | ㎡ |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공간연출이 주부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합니다.



156호
(1608, 1609, 1610 - 5,6,7 라인)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3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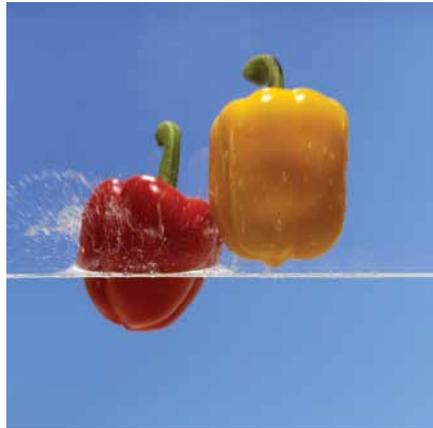
전용 36.63m² 52 호

| | |
|---------|------------------------|
| 전용면적 | 36.6300 |
| 주거공용면적 | 14.4627 m ² |
| 기타공용면적 | 1.5103 m ² |
| 지하주차장면적 | 10.6930 m ² |
| 계약면적 | 63.2960 m ²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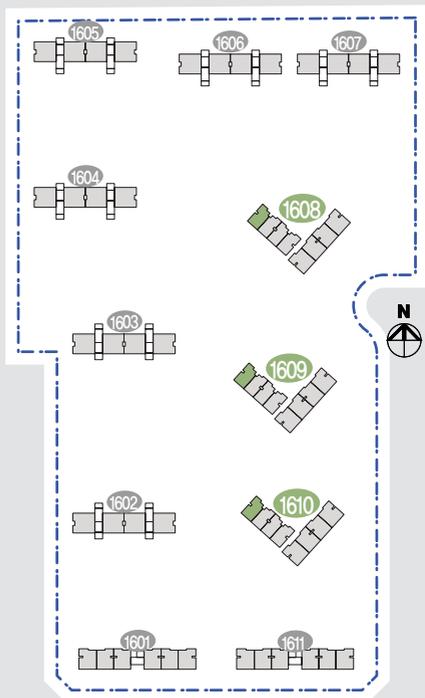
| | | |
|---------|-------|----------------------|
| 거실 / 침실 | 13.16 | m ² |
| 반침 | 0.96 | m ² |
| 주방 / 식당 | 10.94 | m ² |
| 욕실 | 3.20 | m ² |
| 침실 1 | 6.52 | m ² |
| 현관 | 1.85 | m ² |
| <hr/> | | 36.63 m ² |

| | | |
|-------|------|----------------------|
| 발코니 1 | 7.33 | m ² |
| 발코니 2 | 5.28 | m ² |
| <hr/> | | 12.61 m ² |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²×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동선과 일차형 배치로 햇살과 바람이 더 쉽게 넘나듭니다.



52호
(1608, 1609, 1610 - 8 라인)

12
층
13
층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46A

전용46.66㎡ 176 호

| | | |
|---------|---------|---|
| 전용면적 | 46.6600 | ㎡ |
| 주거공용면적 | 18.4228 | ㎡ |
| 기타공용면적 | 1.9239 | ㎡ |
| 지하주차장면적 | 13.6209 | ㎡ |
| 계약면적 | 80.6276 | ㎡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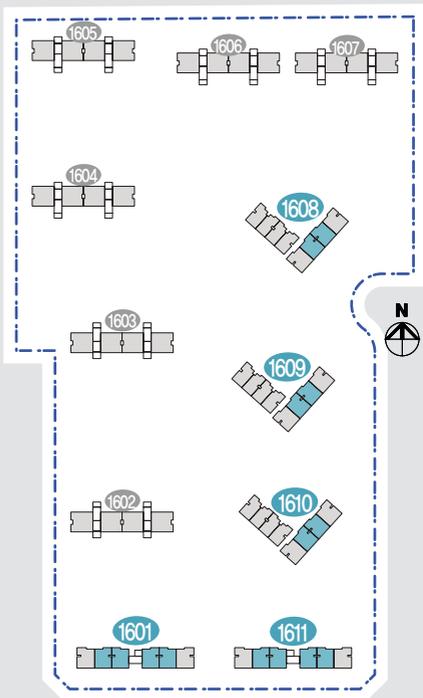
| | | |
|--------------|-------|----------|
| 거실 | 8.37 | ㎡ |
| 반침 | 1.15 | ㎡ |
| 주방/식당 | 14.04 | ㎡ |
| 욕실 | 3.56 | ㎡ |
| 침실 1 | 8.91 | ㎡ |
| 침실 2 | 9.00 | ㎡ |
| 현관 | 1.63 | ㎡ |
| 46.66 | | ㎡ |

발코니 1 9.86 ㎡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의 실용적인 공간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부릅니다.



176호
1608, 1609, 1610 - 2,3 라인
1601, 1611 - 2,3,4,5 라인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46B

전용46.66㎡ 36 호

| | | |
|---------|---------|---|
| 전용면적 | 46.6600 | ㎡ |
| 주거공용면적 | 18.4228 | ㎡ |
| 기타공용면적 | 1.9239 | ㎡ |
| 지하주차장면적 | 13.6209 | ㎡ |
| 계약면적 | 80.6276 | ㎡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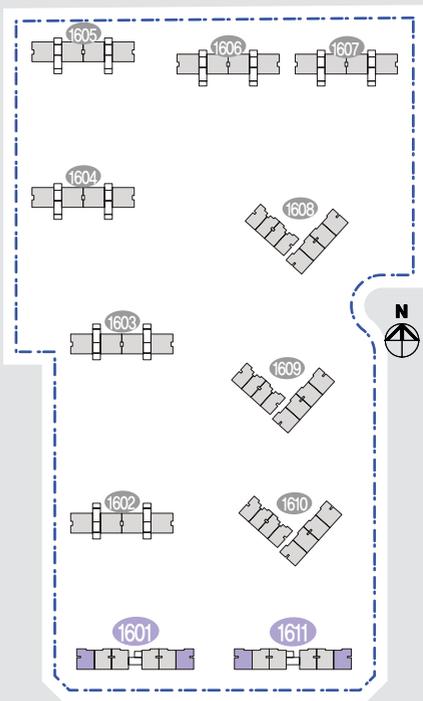
| | | | | |
|-------|---|-------|-------|---|
| 거실 | 실 | 8.37 | ㎡ | |
| 반침 | 침 | 1.15 | ㎡ | |
| 주방/식당 | | 14.04 | ㎡ | |
| 욕실 | 실 | 3.56 | ㎡ | |
| 침실1 | 실 | 8.91 | ㎡ | |
| 침실2 | 실 | 9.00 | ㎡ | |
| 현관 | 관 | 1.63 | ㎡ | |
| | | | 46.66 | ㎡ |

| | | | | |
|------|---|------|-------|---|
| 발코니1 | 1 | 9.86 | ㎡ | |
| 발코니2 | | 5.10 | ㎡ | |
| | | | 14.96 | ㎡ |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웃게 하는 또 하나의 공간 마음까지 넓게 합니다.



36 호
1601, 1611 - 1,6 라인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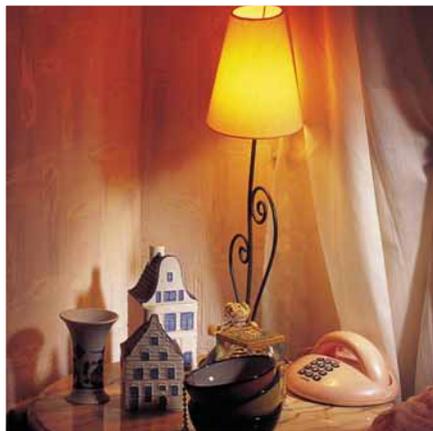
46C

전용46.66㎡ 104 호

| | | |
|---------|---------|---|
| 전용면적 | 46.6600 | ㎡ |
| 주거공용면적 | 18.4228 | ㎡ |
| 기타공용면적 | 1.9239 | ㎡ |
| 지하주차장면적 | 13.6209 | ㎡ |
| 계약면적 | 80.627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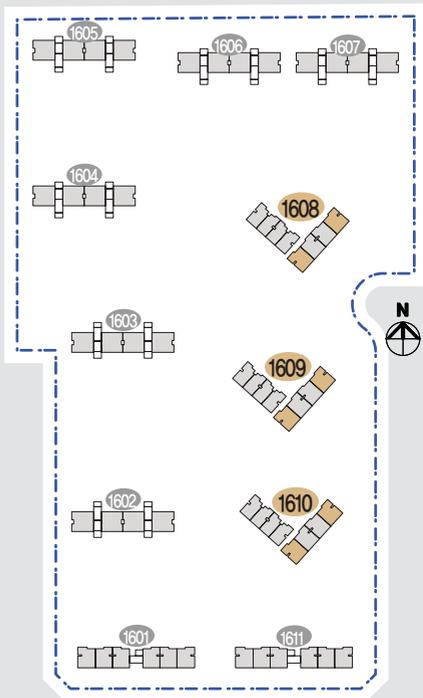
실별면적

| | | |
|--------------|-------|----------|
| 거실 | 8.37 | ㎡ |
| 반침 | 1.15 | ㎡ |
| 주방/식당 | 14.04 | ㎡ |
| 욕실 | 3.56 | ㎡ |
| 침실 1 | 8.91 | ㎡ |
| 침실 2 | 9.00 | ㎡ |
| 현관 | 1.63 | ㎡ |
| 46.66 | | ㎡ |
| ----- | | |
| 발코니 1 | 9.86 | ㎡ |
| 발코니 2 | 5.21 | ㎡ |
| 15.07 | | ㎡ |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이
가족의 행복한 나날을 만듭니다.



104 호
1608, 1609, 1610 - 1,4 라인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59N

전용59.42㎡ 126 호

| | | |
|---------|----------|---|
| 전용면적 | 59.4200 | ㎡ |
| 주거공용면적 | 23.4609 | ㎡ |
| 기타공용면적 | 2.4500 | ㎡ |
| 지하주차장면적 | 17.3458 | ㎡ |
| 계약면적 | 102.676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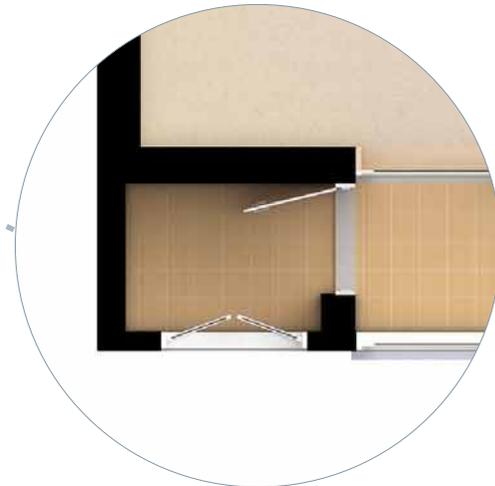
실별면적

| | | | | |
|-------|-----|-------|-------|---|
| 거실 | 실 | 18.63 | ㎡ | |
| 주방/식당 | | 8.46 | ㎡ | |
| 욕실 | 실 | 4.02 | ㎡ | |
| 침실 | 실 1 | 10.53 | ㎡ | |
| 침실 | 실 2 | 7.74 | ㎡ | |
| 침실 | 실 3 | 8.37 | ㎡ | |
| 현관 | | 1.67 | ㎡ | |
| | | | 59.42 | ㎡ |

| | | | | |
|-----|---|-------|-------|---|
| 발코니 | 1 | 11.96 | ㎡ | |
| 발코니 | 2 | 12.21 | ㎡ | |
| | | | 24.1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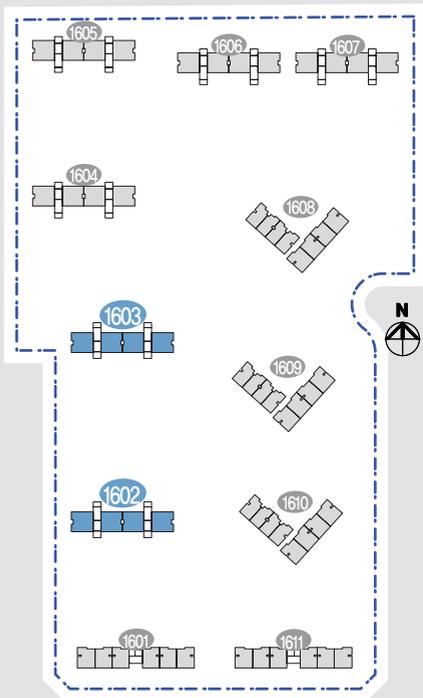


(촉세대)대피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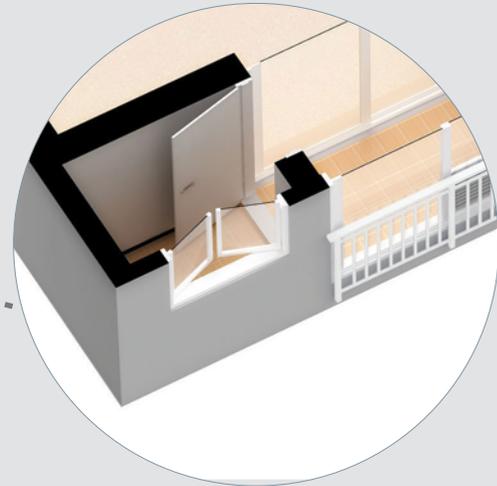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묻어나는 공간! 활력넘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126 호
1602, 1603, - 1,2,3,4 라인



(촉세대)대피공간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59s

전용59.42㎡ 230호

| | | |
|---------|----------|---|
| 전용면적 | 59.4200 | ㎡ |
| 주거공용면적 | 23.4609 | ㎡ |
| 기타공용면적 | 2.4500 | ㎡ |
| 지하주차장면적 | 17.3458 | ㎡ |
| 계약면적 | 102.676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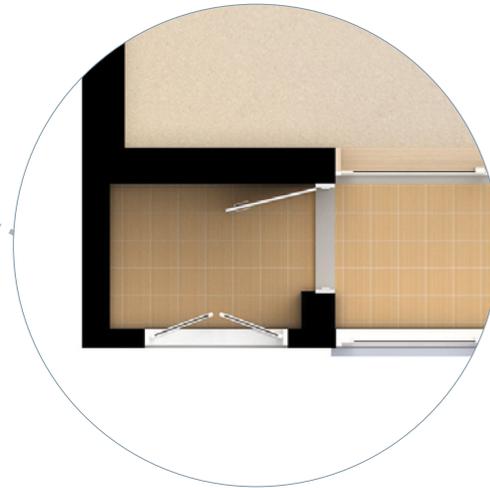
실별면적

| | | | | |
|-------|---|-------|-------|---|
| 거실 | 실 | 18.63 | ㎡ | |
| 주방/식당 | | 8.46 | ㎡ | |
| 욕실 | 실 | 4.02 | ㎡ | |
| 침실 1 | 실 | 10.53 | ㎡ | |
| 침실 2 | 실 | 7.74 | ㎡ | |
| 침실 3 | 실 | 8.37 | ㎡ | |
| 현관 | 관 | 1.67 | ㎡ | |
| | | | 59.42 | ㎡ |

| | | | | |
|-------|--|-------|-------|---|
| 발코니 1 | | 11.96 | ㎡ | |
| 발코니 2 | | 12.21 | ㎡ | |
| | | | 24.1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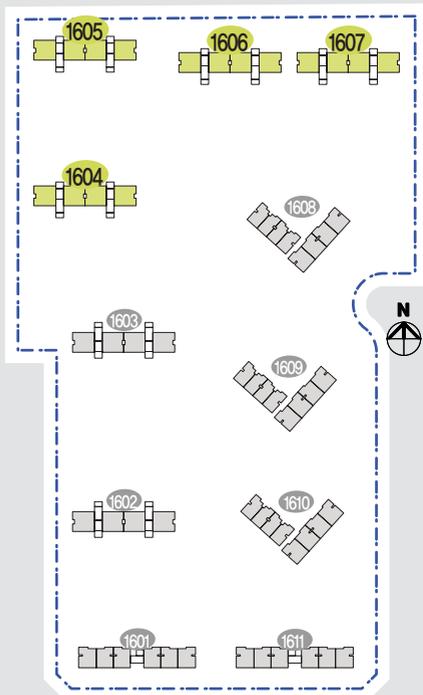


(촉세대)대피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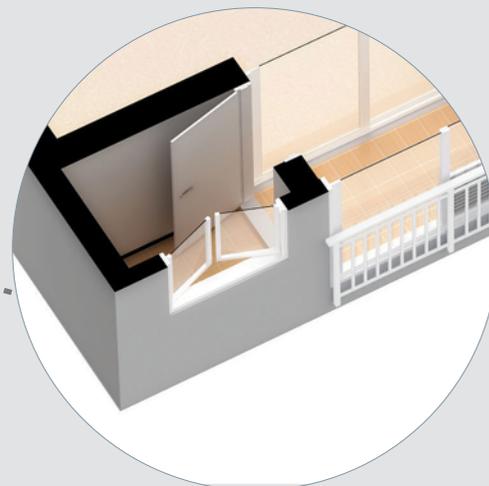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권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025=평)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기준임)
- 본 면적표의 전용 및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확장 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할 수 있습니다.

더욱 넓어진 생활의 무대가
더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합니다.



230 호
1604, 1605, 1606, 1607 - 1,2,3,4 라인



(촉세대)대피공간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 및 투시도에 설치된 렌지후드는 슬림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동호배치도

| | | | | | |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 | | | 204 | 205 | 206 |
| | | | 104 | 105 | 106 |
| 경로당 | | | | | |
| 46B | 46A | 46A | 46A | 46A | 46B |

▲ ▲

1601동 54세대

| | | | |
|------|------|------|------|
| 1601 | 1602 | 1603 | 1604 |
| 1501 | 1502 | 1503 | 1504 |
| 1401 | 1402 | 1403 | 1404 |
| 1301 | 1302 | 1303 | 1304 |
| 1201 | 1202 | 1203 | 1204 |
| 1101 | 1102 | 1103 | 1104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 ▲ ▲ | | | |
| 59N | 59N | 59N | 59N |

1602동 64세대

| | | | | |
|------|------|------|------|-----|
| 1601 | 1602 | 1603 | 1604 | |
| 1501 | 1502 | 1503 | 1504 | |
| 1401 | 1402 | 1403 | 1404 | |
| 1301 | 1302 | 1303 | 1304 | |
| 1201 | 1202 | 1203 | 1204 | |
| 1101 | 1102 | 1103 | 1104 | |
| 1001 | 1002 | 1003 | 1004 | |
| 901 | 902 | 903 | 904 | |
| 801 | 802 | 803 | 804 | |
| 701 | 702 | 703 | 704 | |
| 601 | 602 | 603 | 604 | |
| 501 | 502 | 503 | 504 | |
| 401 | 402 | 403 | 404 | |
| 301 | 302 | 303 | 304 | |
| 201 | 피로티 | | 203 | 204 |
| 101 | | | 103 | 104 |
| ▲ ▲ | | | | |
| 59N | 59N | 59N | 59N | |

1603동 62세대

| | | | |
|------|------|------|------|
| 1601 | 1602 | 1603 | 1604 |
| 1501 | 1502 | 1503 | 1504 |
| 1401 | 1402 | 1403 | 1404 |
| 1301 | 1302 | 1303 | 1304 |
| 1201 | 1202 | 1203 | 1204 |
| 1101 | 1102 | 1103 | 1104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 ▲ ▲ | | | |
| 59S | 59S | 59S | 59S |

1604동 64세대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 1901 | 1902 | 1903 | 1904 |
| 1801 | 1802 | 1803 | 1804 |
| 1701 | 1702 | 1703 | 1704 |
| 1601 | 1602 | 1603 | 1604 |
| 1501 | 1502 | 1503 | 1504 |
| 1401 | 1402 | 1403 | 1404 |
| 1301 | 1302 | 1303 | 1304 |
| 1201 | 1202 | 1203 | 1204 |
| 1101 | 1102 | 1103 | 1104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 ▲ ▲ | | | |
| 59S | 59S | 59S | 59S |

1605동 80세대

| | | | |
|------|------|------|------|
| 1301 | 1302 | | |
| 1201 | 1202 | | |
| 1101 | 1102 | |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 ▲ ▲ | | | |
| 59S | 59S | 59S | 59S |

1606동 46세대

| | | | |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 ▲ ▲ | | | |
| 59S | 59S | 59S | 59S |

1607동 40세대

| | | | | | | | |
|------|------|------|------|------|------|------|------|
|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1107 | 1108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 ▲ ▲ | | | | | | | |
| 46C | 46A | 46A | 46C | 36A | 36A | 36A | 36C |

1608동 136세대

| | | | | | | | |
|------|------|------|------|------|------|------|------|
|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1107 | 1108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 ▲ ▲ | | | | | | | |
| 46C | 46A | 46A | 46C | 36A | 36A | 36A | 36C |

1609동 14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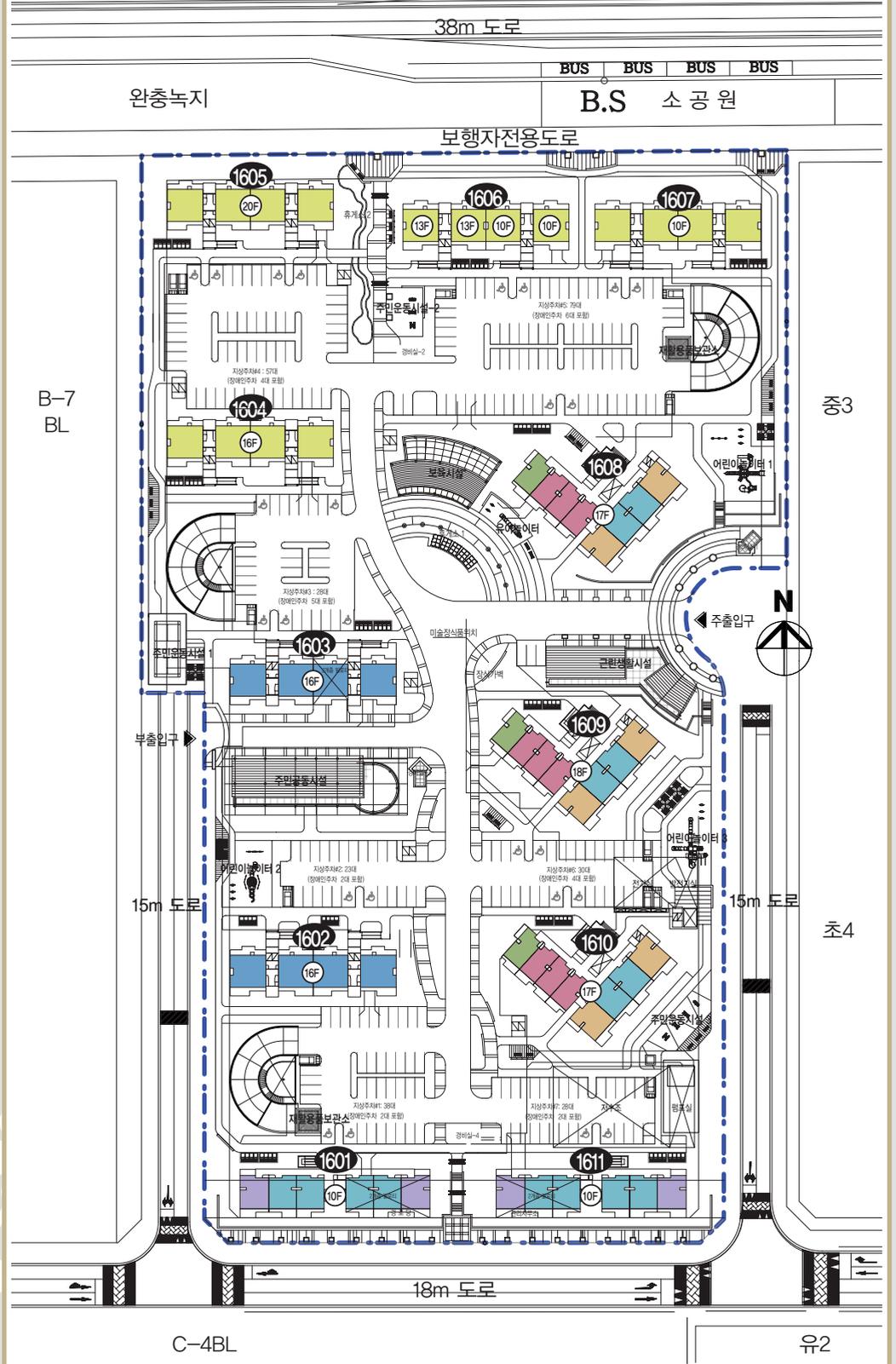
| | | | | | | | |
|------|------|------|------|------|------|------|------|
|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1107 | 1108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 | | | | | | | |
|-------|-----|-----|-----|-------|-----|-----|-----|
| 46C | 46A | 46A | 46C | 36A | 36A | 36A | 36C |
| 1610동 | | | | 136세대 | | | |

| | | | | | |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 201 | 202 | 203 | 관리사무실 | | |
| 101 | 102 | 103 | | | |

| | | | | | |
|-------|-----|-----|------|-----|-----|
| 46B | 46A | 46A | 46A | 46A | 46B |
| 1611동 | | | 54세대 | | |

A-5블록 단지배치도



| | | | | | |
|------------|------------|------------|--|--|--|
| 총 880 호 | | | | | |
| 36A : 156호 | 46A : 176호 | 59N : 126호 | | | |
| 36C : 52호 | 46B : 36호 | 59S : 230호 | | | |
| 46C : 104호 | | | | | |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수원호매실 A-5BL)

| 품 목 | | 시 설 내 역 | 비 고 |
|---------|-----------|---|---------------|
| 현관 | 현관도어록 | 레버형 도어록 | |
| | 신발장 | HPM (가구전용) | |
| | 현관바닥 | 자기질 타일 | |
| | 현관등 | 센서등 | |
| 거실 | 비디오폰 | 칼라 | |
| | 거실바닥재 | 룸카펫 | |
| | 거실등 | 일반형 | |
| | 거실벽지 | 벽지 : 실크, 천정 : 발포 | |
| 주방/식당 | 싱크대 | 싱크+상부장+하부장 | |
| | 개수대 | 스텐언더형 | |
| | 렌지후드 | 슬림형 | |
| | 주방싱크수전 | 대붙이형 | |
| | 주방바닥재 | 룸카펫 | |
| | 주방타일 | 도기질타일 | |
| 침실 | 침실바닥재 | 룸카펫 | |
| | 침실벽지 | 벽지 : 실크, 천정 : 발포 | |
| | 침실문짝 | ABS도어 | |
| | 창틀 | 합성수지창틀 | |
| 욕실 | 욕조 | 아크릴욕조 | 46형 및 59형만 해당 |
| | 세면기 | 도기세면기 | |
| | 양변기 | 준원피스형 | |
| | 욕조수전 | 싱글레버 (안마헤드포함) | 46형 및 59형만 해당 |
| | 샤워수전 | 싱글레버 (안마헤드포함) | 36형 해당 |
| | 세면기수전 | 싱글레버 | |
| | 욕실타일 | 벽:도기질타일, 바닥:자기질타일 | |
| 발코니 | 발코니샷시 | 플라스틱 발코니샷시 | |
| | 세탁기수전 | 냉수용 : 36㎡형및46㎡형:2구형+스프레이건, 59㎡형:1구형 온수용 : 36㎡형및46㎡형:2구형, 59㎡형:1구형 가로꼭지 | |
| | 발코니수전 | 36㎡형및46㎡형은 없음, 59㎡형은 화초물주기수전(스프레이건) | |
| 기타/정보통신 | 위성TV수신시스템 | 디지털방송 및 위성TV수신시스템 | |
| | 정보통신 |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 |
| | CCTV시스템 |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에 설치 | |

NH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1. 4.22 공고]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국민임대주택 A-5블록 (880호)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수원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 신청날짜에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

| 블록 | 공급 형태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 | |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 입주 예정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 합계 |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 | | | |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 | | | | |
| A-5블록 | 36형 | 36A 36C | 36.63 | 14.4627 | 1.5103 | 10.6930 | 63.2960 | 208 | 154 | 54 | 2012년 3월 |
| | 46형 | 46A 46B 46C | 46.66 | 18.4228 | 1.9239 | 13.6209 | 80.6276 | 316 | 236 | 80 | |
| | 59형 | 59N 59S | 59.42 | 23.4609 | 2.4500 | 17.3458 | 102.6767 | 356 | 262 | 94 | |

-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공급형태의 36형은 15평형, 46형은 19평형, 59형은 25평형이며, 36형과 46형은 복도식으로, 59형은 계단식으로 건설됨
-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태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일반세대 및 특수세대는 구분하지 않음-주택유형은 팜플릿 참조)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위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임대조건

| 공급형태 | 임대보증금(원) | | | 월임대료 (원) |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36형 | 16,100,000 | 3,220,000 | 12,880,000 | 123,000 |
| 46형 | 28,600,000 | 5,720,000 | 22,880,000 | 179,000 |
| 59형 | 44,100,000 | 8,820,000 | 35,280,000 | 296,000 |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항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의 지자체 추천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부과함

|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4. 22)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39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
-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중 여성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공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공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공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 (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
| 3인이하 가구 | 2,805,360원 이하 | * 최종 월평균소득은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 4인 가구 | 3,112,90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 이하 |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함
- ※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임대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중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배정호수

| 공급 형태 | 우 선 공 급 | | | | | | | | | | | | | | 일반 공급 |
|----------|---------|--------------------|-------------------------|-----|--------------|-------------|------------------------------|--|-----------------|------------|-------------|--------------------|----------|------|----------|
| | 계 | 주 택 공 급 규 칙 제 32 조 | | | | | | | | | | | | | |
| | | 제4항 | 제5항 | | | | | |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 | | 지자체 철거민 |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
| 36형 | 154 | 3 | 10 | 10 | 4 | 2 | 10 | 4 | 20 | 20 | 6 | 4 | 61 | 54 | |
| 46형 | 236 | 22 | 14 | 14 | 5 | 3 | 14 | 5 | 29 | 29 | 8 | 5 | 88 | 80 | |
| 59형 | 262 | 1 | 17 | 17 | 7 | 3 | 17 | 7 | 35 | 35 | 10 | 7 | 106 | 94 | |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의 우선공급 물량 중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정을 기준으로 제32조 제5항 내 타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우선공급 대상자

| 구 분 | 신 청 자 격 |
|-----------------------------------|---|
| 지자체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및 지자체(수원시)의 요청에 의한 자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점 높은 자, 추천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만65세 이상 고령자 ⑨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남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⑮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p>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 <p>■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으며, ④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p> <p>■ 입주자 선정순위 ①순위(1순위→2순위), ②거주지역(수원시거주자 → 그외 수도권), ③자녀수가 많은 자, ④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p> <p>■ 자녀수 산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포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임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p> |

입주자 선정 기준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
|----------------------|--|----------------------|----------------------|
| 36·46형 (전용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 |
|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 | 3인이하 | 2,003,830 원 | 2,805,360 원 |
| | 4인 | 2,223,500 원 | 3,112,900 원 |
| | 5인이상 | 2,354,880 원 | 3,296,830 원 |
| | 2. 배점이 높은 자(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 |
| |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 | | |
| 59형 (전용 50㎡이상) | 1. 배점이 높은 자(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 |
| | 2.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 | | |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해외거주재외동포,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 36·46형 (전용 50㎡미만) |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위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의 소득기준표 참조)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 59형 (전용 50㎡이상) | 1.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상기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수원시 거주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천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 배점기준표

| 구분 | 3점 | 2점 | 1점 |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 |
| ⑨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신청일정 및 장소

- 기관추천대상자는 방문신청, 일반공급 및 기타우선공급은 인터넷 · 방문신청 병행

| 신청 형별 |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일정 | | 신청장소 |
|---|---|-------------------|---------------------|------------------|---|
| | | | 일자 | 시간 | |
| 전용면적 50㎡미만 (36형, 46형) | 2,805,360원이하 (단, 4인 가구 : 3,112,90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이하) | 우선공급 (특별공급 포함) | 2011.5.2(월)~ 5.3(화) | 오전9시30분 ~오후5시 | 1. 인터넷 접수시 공사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시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화서역 인근) |
| | 2,003,830원이하 (단, 4인 가구 : 2,223,50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 2,354,880원 이하) | 일반공급 1 순위 | 2011.5.2(월)~ 5.3(화) | | |
| | | 일반공급 2 순위 | 2011.5.4(수) | | |
| | | 일반공급 3 순위 | 2011.5.6(금) | | |
| 2,805,360원이하 (단, 4인 가구 : 3,112,90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이하) | 일반공급 1, 2, 3 순위 | 2011.5.9(월) | | | |
| 전용면적 50㎡이상 (59형) | 2,805,360원이하 (단, 4인 가구 : 3,112,90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이하) | 우선공급 (특별공급 포함) | 2011.5.2(월)~ 5.3(화) | 오전9시30분 ~오후5시 | 1. 인터넷 접수시 공사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시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화서역 인근) |
| | | 일반공급 1 순위 | 2011.5.2(월)~ 5.3(화) | | |
| | | 일반공급 2 순위 | 2011.5.4(수) | | |
| | | 일반공급 3 순위 | 2011.5.6(금) | | |

※ 기관추천대상자(사업지구 및 지자체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재외동포)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넷 신청'참조

※ 인터넷 · 방문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 [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40%)]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별도 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방문접수시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화서역 도보 5분거리)을 이용하여 주시고,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의 편의 도모 및 혼잡방지를 위해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을 병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지자체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재외동포)와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회원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신청순서 : LH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국민임대 → 지구조회 → 주택형조회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 선택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서 작성(신청내용 확인)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 소득 · 배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기한(2011.5.30(월)~5.31(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내 관련서류를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당첨자(예비입주자)를 확정합니다.

■ 신청시간 등 기타 사항

-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5시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방문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5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방문신청 접수장소(수원 국민임대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선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4.22) 이후 발급분 제출]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수원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수원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수원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별,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1통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http://www.ap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기능), 주민등록증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
- 소득입증서류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해당자격 |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단,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세무서/해당직장 |
| | '11년 신규취업자 또는 '11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1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0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목 | 공급 대상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우선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주민센터 |
| |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6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사실 확인서 | 시·군·구청 |
| |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⑨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 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 ⑪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 ⑫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 ⑭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 ⑮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
| | ⑯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 ⑰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
| | ⑱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 ⑥ 중소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신청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공고문 상단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신청자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2011.5.26(목) 오후 3시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 2011.5.30(월)~31(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 2011.6.9(목) 오후 3시 (LH 홈페이지 등) | 2011.6.22(수)~24(금) 오전9시30분~오후3시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

※ 주택의 동·호는 공급형별(36형, 46형, 59형)에 따라 동별·층별·항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하며,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 계약체결가능하며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함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안내는 착오 가능성이 있어 개별응답을 하지 않음)

- ※ 인터넷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이며,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에 의해 당첨자 발표(2011.6.9)시 확정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선택 → 우측상단의"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립니다"를 선택 → '수원호매실 A-5BL 서류제출대상자 명단'클릭 → 본인의 접수번호와 이름으로 대상여부 확인
-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명단" 또는 "예비자명단" 선택 → 신청형태를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위는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안내

■ 계약시 구비서류

- ①계약금 ②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관계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은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원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 · 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지구는 인접지역에 수원비행장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 남측에 열공급설비, 변전소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A-5블록 동측에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A-5블록은 (주)신동아건설, 대한송유관공사이며, 감리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탑, 쓰레기 이송설비 투입구,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중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기간(6.22~6.24)내 신청자에 한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립니다.(팜플릿 뒷면 안내문 참고) |
| 입주세대 학생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호매실4초(가칭, 2012.03 개교 예정)에 수용 예정이고, 중학생은 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 호매실3중(가칭, 2013.03 개교 예정)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학생수용계획은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매실지구 내 학교시설은 교육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금융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설치내용 | 제공대상 |
|-----------|--|------------|
| 현관 | 마루굽들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령자, 지체장애인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싱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시호기 | 시각장애인 |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6.22~6.24)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팸플릿 배부처 | | | | | |
|--|--|------|---------------------------|-------|---|
| ☞ 본사 고객 상담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화서역 인근)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style="background-color: #90EE90;">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임대문의</td> <td style="padding: 5px;">☎ 1600-7100 대표전화 (월~금)</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90EE90;"> <td style="padding: 5px;">인 터 넷</td> <td style="padding: 5px;">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myhome.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td> </tr> </table> | 임대문의 | ☎ 1600-7100 대표전화 (월~금)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myhome.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임대문의 | ☎ 1600-7100 대표전화 (월~금) | | | |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myhome.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 | |



LH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수원국민임대 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임대문의

전 국 대 표 전 화 : 1600-7100

홈 페 이 지 : www.LH.or.kr

